

● 제314회 ●  
서울특별시의회  
제2차 보건복지위원회

서울특별시 청년 장애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 
조례안  
**검토보고서**  
(의안번호 : 138)

2022. 9. 22.

보건복지위원회  
수석전문위원

## 【서울특별시장 제출】

의안번호 138

### I. 조례안 개요

#### 1. 제출경위

- 가. 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- 나. 제출일자 : 2022년 08월 29일
- 다. 회부일자 : 2022년 09월 02일

#### 2. 제안이유

- 본 조례(안)은 군 복무 중 부상 또는 질병으로 전역한 청년 제대군인들의 희생과 헌신을 잊지 않고, 그들의 신속한 일상 복귀와 공정한 사회 진출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
- 「국가보훈기본법」은 ‘희생·공헌자’에 대한 공훈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지만, 군 복무 중 부상 또는 질병으로 전역하는 제대군인의 경우, 그 ‘희생·공헌자’로 등록하기 위해서 제도 또는 절차 안내에 대해 미흡한 점이 있음
- 아울러 군 복무 중 부상 또는 질병으로 전역은 하였으나, 등급외 판정으로 ‘희생·공헌자’로 등록하지 못하는 청년 제대군인에 대해서는 보훈 사각지대로 남아있는 실정임
- 이러한 보훈정책의 미흡한 부분이나 보훈 사각지대를 해소함으로써 청년 제대군인들의 공정한 사회 진출을 지원하며 공공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

### **3. 주요내용**

가. 목적, 정의, 시장의 책무에 관한 규정(안 제1조~제3조)

- 시장은 군복무 중 부상 당한 청년 장해 제대군인 및 청년 유공자 등의 보훈 관련 법률지원, 심리상담 등 지원을 통해 사회복귀 지원 노력

나. 사업계획 수립 및 지원대상에 관한 규정(안 제4조~제5조)

- 시장은 군복무 중 부상 당한 청년 장해 제대군인 및 청년 유공자 지원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사업계획을 수립·시행

다. 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방법에 관한 규정(안 제6조~제8조)

- 청년 장해 제대군인 및 청년유공자의 건강한 삶과 사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‘청년 장해 제대군인 상담센터’를 설치·운영할 수 있음
- ‘상담센터’의 운영은 출자·출연기관에 대행하게 하거나,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할 수 있음

라. 인적정보의 수집·관리 등에 관한 규정(안 제9조)

- 지원대상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하여 인적정보를 정보제공자의 동의 절차를 거쳐서 수집·관리할 수 있음

### **4. 참고사항**

가. 관계법령 : 「국가보훈기본법」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참조

다. 기타

(1) 입법예고(‘22. 6. 2. ~ 6. 22.) 결과 : 의견없음

(2)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: 별첨

## II. 검토의견 (수석전문위원 박지향)

### 1 제정안의 개요

- 본 제정안은 군 복무 중 부상 또는 질병으로 전역은 하였으나, 등급외 판정으로 ‘희생·공헌자’로 등록하지 못하는 보훈 사각지대 청년 제대군인들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려 하는 것임.
- 현재의 제대군인 지원정책은 주로 간부 제대자를 대상으로 하는 중·장기 복무 제대군인에 비중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의무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은 상대적으로 매우 미약하다고 할 수 있음.<sup>1)</sup>
- 이에 서울시에서는 군 복무 중 부상을 당한 청년 제대군인을 중심으로 안정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고, 신속한 일상 복귀와 사회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임.
- 제정안은 10개의 본칙 조문과 1개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.

#### <조례안의 조문 배열>

제1조(목적)	제6조(청년 장해 제대군인 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)
제2조(정의)	제7조(비용의 지원)
제3조(시장의 책무)	제8조(대행·위탁)
제4조(사업계획의 수립)	제9조(인적정보의 수집·관리 등)
제5조(지원대상)	제10조(시행규칙)
	부 칙

1) 남광규. (2020). 의무복무 제대군인 지원방안에 관한 연구. *한국보훈논총*, 19(3), 73-96.

## 2 제정안의 주요내용 검토

### 가. 충칙 규정 (안 제1조~제3조)

- 제정안 제1조는 국가 수호의 임무를 수행하다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전상·공상 청년 유공자, 재해부상 청년제대군인 등의 건강한 삶과 사회진출을 지원한다는 조례의 목적을 명시하고, 안 제2조에서는 주요 용어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.
- 제정안 제2조의 정의에서는 관련 법과 조례에서 주요 정의를 차용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, 특히 “청년”의 경우 「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」 제3조제1호에 따른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음.
- 또한, 제정안 제2조제1항3호에서 정의하는 “제대군인”은 「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‘제대군인법’)의 정의를 일부 차용하면서, 「제대군인법」에서는 「병역법」 또는 「군인사법」에 따라 군 복무를 마치고 전역한 사람을 말하는 데 비해, 본 제정안에서는 ‘부상 또는 질병으로’ 전역한 사람을 추가한 것이 차이라 하겠음.

- 「병역법」 2)에서는 병역의 종류를 현역, 예비역, 보충역, 병역준비역, 전시근로역, 대체역 등으로 구분하고 있으며, 「군인사법」에서는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, 준사관, 부사관 및 병, 사관생도, 사관후보생, 준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, 소집되어 군에 복무하는 예비역 및 보충역으로 구분하고 있음.
- 현행 「제대군인법」에 따르면 “장기복무 제대군인” 이란 10년 이상 현역으로 복무하고, 장교·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전역한 사람을 말하며, “중기복무 제대군인” 이란 5년 이상 10년 미만 현역으로 복무하고, 장교·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전역한 사람을 말하고 있음.

- 
- 2) 「병역법」 5조(병역의 종류) ① 병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. <개정 2013. 6. 4., 2016. 5. 29., 2019. 12. 31.>
1. 현역: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    - 가. 징집이나 지원에 의하여 입영한 병(兵)
    - 나. 이 법 또는 「군인사법」에 따라 현역으로 임용 또는 선발된 장교(將校) · 준사관(準士官) · 부사관(副士官) 및 군간부후보생
  2. 예비역: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    - 가. 현역을 마친 사람
    - 나.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예비역에 편입된 사람
  3. 보충역: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    - 가. 병역판정검사 결과 현역 복무를 할 수 있다고 판정된 사람 중에서 병력수급(兵力需給) 사정에 의하여 현역병입영 대상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사람
    - 나.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복무하고 있거나 그 복무를 마친 사람
- 1) 사회복무요원
  - 2) 삭제 <2016. 1. 19.>
  - 3) 예술·체육요원
  - 4) 공중보건의사
  - 5)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
  - 6) 삭제 <2016. 1. 19.>
  - 7) 공익법무관
  - 8) 공중방역수의사
  - 9) 전문연구요원
  - 10) 산업기능요원
- 다.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
4. 병역준비역: 병역의무자로서 현역, 예비역, 보충역, 전시근로역 및 대체역이 아닌 사람
  5. 전시근로역: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    - 가. 병역판정검사 또는 신체검사 결과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는 할 수 없으나 전시근로소집에 의한 군사지원업무는 감당할 수 있다고 결정된 사람
    - 나.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사람
  6. 대체역: 병역의무자 중 「대한민국헌법」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, 보충역 또는 예비역의 복무를 대신하여 병역을 이행하고 있거나 이행할 의무가 있는 사람으로서 「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대체역에 편입된 사람
- ② 예비역에 편입된 사람은 예비역의 장교·준사관·부사관 또는 병으로,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은 보충역의 장교·준사관·부사관 또는 병으로,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사람은 전시근로역의 부사관 또는 병으로 구분한다. <개정 2016. 5. 29.>
  - ③ 병역의무자는 각각 그 병역의 병적에 편입되며, 병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- 또한 현행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은 「제대군인법」에 의해 5년 이상 복무한 중·장기복무 제대군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, 취·창업 지원, 구직활동 지원, 직업교육훈련 등이 주된 내용임.

### <표> 보훈관서 제대군인 지원제도

지원제도	주요내용		
취업지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지원대상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전역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</li> <li>- 전역 후 3년이 경과하였으나 생활수준 조사결과 국가보훈처장이 정한 기준 이하인 자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장기복무 제대군인 본인이나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질병 또는 장애 발생시 자녀1인 대리 취업</li> </ul> </li> </ul> </li> <li>· 지원내용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20인 이상(제조업체 200인 이상)을 고용하는 기업체 등에 보훈특별 고용</li> <li>-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, 군부대, 국·공립학교 특별채용</li> <li>- 지원신청 : 취업희망지역 관찰 보훈관서에 취업희망신청서 제출</li> </ul> </li> </ul>		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2년 이상 군복무자 : 3세 연장, 1년 이상 2년 미만 군복무자 : 2세 연장 1년 미만 군복무자 : 1세 연장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채용시험 응시연령 상한 연장 및 군복무 경력의 호봉·임금반영은 보훈관서 등록 불필요</li> </ul> </li> <li>· 군복무 경력을 취업지원 실시기관의 호봉이나 임금결정 시 반영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취업지원 실시기관 재량</li> </ul> </li> </ul>		
교육지원	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r> <td style="width: 20%;">제대군인 본인</td> <td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지원대상 :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중 전역 후 3년 이내에 대학에 입학 또는 복학한 사람</li> <li>· 지원내용 : 본인이 대학에 입학하거나 재학 중인 경우 50%까지 보조 (입학금, 수업료)</li> <li>· 지원절차 : 보훈관서에서 발행한 제대군인(자녀)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를 교육기관에 제출</li> <li>· 지원제외 : 교육지원을 받으려고 하는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</li> </ul> </td> </tr> </table>	제대군인 본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지원대상 :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중 전역 후 3년 이내에 대학에 입학 또는 복학한 사람</li> <li>· 지원내용 : 본인이 대학에 입학하거나 재학 중인 경우 50%까지 보조 (입학금, 수업료)</li> <li>· 지원절차 : 보훈관서에서 발행한 제대군인(자녀)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를 교육기관에 제출</li> <li>· 지원제외 : 교육지원을 받으려고 하는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</li> </ul>
제대군인 본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지원대상 :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중 전역 후 3년 이내에 대학에 입학 또는 복학한 사람</li> <li>· 지원내용 : 본인이 대학에 입학하거나 재학 중인 경우 50%까지 보조 (입학금, 수업료)</li> <li>· 지원절차 : 보훈관서에서 발행한 제대군인(자녀)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를 교육기관에 제출</li> <li>· 지원제외 : 교육지원을 받으려고 하는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</li> </ul>		

지원제도	주요내용	
	제대군인 자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지원대상 :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자녀로 교육지원신청을 통한 생활수준 조사결과 국가보훈처장이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</li> <li>· 지원내용 : 고등학교 취학자녀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보조</li> <li>· 지원신청 : 주소지 관할 보훈관서에 교육지원신청서 제출</li> </ul>
국립묘지안장 지원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국립묘지별 안장대상</li> <li>- 국립서울현충원, 국립대전현충원 : 20년 이상 군복무자 (배우자 합장 가능)</li> <li>- 국립 영천·임실·산청·괴산 호국원 : 10년 이상 군복무자 (배우자 합장 가능)</li> <li>· 안장신청</li> <li>- 인터넷 사이트 국립묘지 안장관리시스템에서 신청</li> <li>- 병적증명서 해당 국립묘지로 팩스 송부</li> <li>· 신청서류 : 병적증명서 1부, 사망진단서 또는 화장증명서 1부</li> </ul>
주택지원 및 대부지원	주택우선공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지원대상 :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중 무주택 세대구성원</li> <li>· 지원내용 : 공공 및 민영 아파트 분양·임대 공급물량 중 제대군인 특별공급분 (복무기간 등 지원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)</li> <li>· 지원신청 : 매년 초 주소지 관할 보훈관서에 신청</li> </ul>
	대부지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지원대상 :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</li> <li>· 제도내용</li> <li>- 대부종류 : 주택 구입(신축)·임차, 아파트 분양, 농토구입, 사업, 생활안정, 학자금 대부한도액 : 300~8,000만원</li> <li>- 연이율 : 상환기관 1.9~2.9%, 대부 종류별로 3~20년</li> <li>- 지원 신청 : 전국 국민은행 또는 농협은행 지점 (신용관리자의 경우 주소지 관할 보훈관서)</li> </ul>
	보훈병원 감면진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지원대상</li> <li>- 대한민국 국군창설에 참여하고 전역한 사람</li> <li>-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</li> <li>- 의무복무기간 중 발병 또는 악화된 중증의 질병을 앓고 있는 제대군인</li> <li>· 지원내용 : 보훈병원(서울, 부산, 광주, 대구, 대전, 인천) 이용시 본인부담 진료비의 50% 감면</li> </ul>
의료지원	경상이자 국비 진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지원대상 : 전·공상 제대군인으로서 상이등급 신체검사 시 등외 판정자</li> <li>· 지원내용 :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심의·의결된 원상병명에 해당하는 상이처에 대하여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에서 국비 진료</li> </ul>
	군병원 무료진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지원대상 :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</li> <li>· 지원내용 : 외래 및 응급진료 (요양급여는 무료, 비급여는 50% 감면)</li> </ul>

지원제도	주요내용
공공시설 감면이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지원대상 : 10년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</li> <li>· 공공시설별 감면비율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전쟁기념관 : 무료</li> <li>- 국가가 관리하는 고궁·능원 : 50% 감면 (단, 특별관람료는 감면대상 O아님)</li> <li>- 국립민속박물관 : 50% 감면</li> </ul> </li> </ul>

(출처 : 2022년 제대군인 지원안내서)

- 이처럼 대부분의 제대군인 지원이 5년 이상 근무한 중·장기 복무자 중심으로 지원되고 있으며, 의무복무 제대 군인에 대해서는 취업취약계층(의무복무자) 취업지원 사업<sup>3)</sup> 등 일부 사업에서만 시행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.
- 한편, ‘22년 8월말 기준 국가보훈처의 통계에 따르면, 보훈대상자<sup>4)</sup> 가운데 본 제정안에서 규정하는 만 39세 미만의 보훈대상자는 32,900명으로 전체 보훈대상자 573,950명 중 약 6%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.
- 2021년 국방통계연보에 따르면, 2020년에 군 복무 중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으로 인하여 심신장애 판정을 받고 퇴직하는 군인에게 지급되는 장애보상금을 지급받은 군인이 771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.
- 의무복무 중 부상을 당하거나 사고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등을 경험한 군인들은 입증 책임을 본인이 증명해야 하고 군에서도 안내를 받지 못해 유공자 신청을 놓친 경우가 기사화되기도 하였음.<sup>5)</sup>

3) 의무복무 제대군인 중 등급기준 외 경상이자, 저소득 모범장병, 취업맞춤특기병 대상

4) 유족 제외, 제대군인 포함

5) “軍사고에 미래 꺾인 ‘바다청년’ ...피해자 배려는 없었다“. KBS 뉴스, 2021년 2월 16일 수정. 2022년 9월 13일 접속,

- 따라서, 본 조례안을 통해서 조례안에서 정의하고 있는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‘청년 장해 제대군인’의 유공자 신청과정 지원을 포함해 보훈관련 법률지원, 심리상담 등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게 됨으로써 의무복무 제대군인 등 보훈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.

#### 나. 사업계획의 수립 및 지원대상 (안 제4조~5조)

- 안 제4조에서는 시장이 청년 장해 제대군인 및 청년유공자를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, 안 제5조에서는 조례에 대한 지원대상에 대해 정의하고 있음.
- 안 제4조에서 규정하는 청년 장해 제대군인 지원에 대한 사업계획은 다음과 같음.

- |  |
|--|
| <b>1. 청년 장해 제대군인 및 청년유공자 지원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</b>           |
| <b>2. 청년 장해 제대군인 및 청년유공자 지원을 위한 상담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</b>     |
| <b>3. 청년 장해 제대군인 및 청년유공자를 위한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</b>           |
| <b>4. 청년 장해 제대군인 및 청년유공자 지원 관련 법·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</b>     |
| <b>5. 그 밖에 청년 장해 제대군인 및 청년유공자의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</b> |

- 이와 관련해 집행기관에서는 ‘21년 11월 『서울시 청년 부상 제대군인 지원계획』을 수립했으며 만 19세 ~ 39세 청년 부상제대군인, 국가보훈대상자를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 비전을 수립한 바 있음.

## 비 전 청년 부상 제대군인의 건강한 삶과 공정한 사회진출 지원

현실과 학생에 합당한 예우·지원

### 추진과제

#### 분야

#### 주요과제

##### 상담

- ▶ 부상군인 지원 원스톱 상담창구 운영
- ▶ 보훈 관련 법률상담 지원

##### 심리재활 지원

- ▶ 심리·정신건강 지원
- ▶ 심리재활 촉진을 위한 자조모임 지원

##### 자립·역량 강화

- ▶ 자립을 위한 창업 및 일자리 지원

##### 예우 강화

- ▶ 「(가칭)나라사랑 청년상」 신설
- ▶ 전상·공상 유공자 기념공간 운영

[그림] 서울시 청년 부상제대군인 지원 계획 정책 비전

- 또한 안 제5조에서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음.

1.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청년 중 군 복무 중 장해를 입은 제대군인
2.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청년 중 군 복무 중 장해로 전역 후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라 국가유공자로 등록한 사람
3.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청년 중 군 복무 중 장해로 전역 후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라 보훈보상대상자로 등록한 사람
4. 그 밖에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청년 장해 제대군인 및 청년유공자의 원활한 사회진출을 돋는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
- 본 제정안에서는 지원대상에 대해 특정 거주기간 등을 지정하지 않고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청년으로 설정하고 있음. 이와 관련해 「서울특별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서도 조례의 적용범위를 “서울특별시에 주소를 둔 주민”으로 두고 있어 적당한 것으로 사료됨.

#### 다. 청년 장해 제대군인 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등 (안 제6조~제8조)

- 안 제6조에서 제8조까지는 청년 장해 제대군인 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음.
- 현재 서울시에서는 ‘22년 3월 ‘서울시 청년 부상제대군인 원스톱 상담창구’를 개소하고 국가유공자 신청 관련 상담 및 법률지원, 심리·재활 프로그램 운영, 일자리 프로그램 연계 등 청년 부상제대군인의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있으며 주요 현황 및 실적은 다음과 같음.

#### 【 서울시 청년 부상제대군인 상담센터 현황】

- 개소일자 : ‘22.3.25.(금)
- 위치 : 중구 세종대로 110, 시민청 지하 1층
- 운영인력 : 총 4명 (서울복지재단 법률지원 변호사 1명 포함)
  - 팀장 (1명), 직원 (3명\*)    \* 변호사 1, 심리지원·취업상담 2
- 추진실적 및 집행액(‘22.8.31 기준)
  - 추진실적 : 상담센터 운영 : 95명 (253건 신청)
    - 상담 및 간담회 : 법률상담 29건/의료자문 6건/보훈상담 146건/국가유공자 신청 6건/개인심리상담 17명(64건)/취업정보제공 9회 81명/자조모임 6회기 28명/간담회 개최 2회 26명, 온·오프라인 홍보 106건(페이스북, 인스타그램, 유튜브, 인터뷰 등)
- 집행액 : 136백만원 (집행률 : 54.4%)

- 제정안 제8조에서는 해당 사무를 대행으로 수행할 수 있게끔 규정하고 있음. ‘행정업무의 대행’이란 법령상의 업무를 대행기관으로 하여금 사실상 행하게 하되, 그 명의는 원 권한자인 행정기관으로 하고 책임도 원 권한자인 행정기관에 귀속되도록 하는 것을 말함. 따라서 대행에 따른 법령상 권한의 이전은 발생하지 않고 대행기관이 원 권한자인 행정 기관 명의로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그 법률적 효과는 원 권한자인 행정기관이 직접 행사한 것과 같은 효력이 발생함.<sup>6)</sup>
- 또한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1조<sup>7)</sup>에도 출자·출연기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조항에 법적 문제는 없다 하겠음.

### 3 종합의견

- 현행 「제대군인법」에 의해 지원되는 제대군인의 대상자는 대부분이 중·장기 복무자 중심으로 청년 의무복무 제대군인 등에 대해서는 지원이 미비한 것이 현실이었음.
  - 이와 관련해 제21대 국회에서도 의무·단기복무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「의무복무 제대군인 지원에 대한 기본법

6) 법제처(2021). 법령입안심사기준.

7)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1조(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)  
① 출자·출연 기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다. 이 경우 그 대행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.  
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 중 국가사무에 관한 경비의 범위, 비용부담의 방법·절차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다만, 제1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 중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관한 경비의 범위, 비용부담의 방법·절차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

안」이 발의되기도 하였음.<sup>8)</sup>

- 따라서 해당 제정안을 통해서 보훈 사각지대라 할 수 있는 청년 장해 제대군인 지원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. 다만, 서울시에서 ‘부상 입고 제대한 청년’을 대상으로 하는 종합지원이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시행<sup>9)</sup>되는 만큼 집행기관에서는 향후 사업 참여자들의 의견수렴, 실적을 포함한 성과평가 등을 통해 사업성과를 철저히 점검하고, 사업이 실질적으로 참여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하겠음.
- 단, 본 조례안에 근거한 청년 장해 제대군인 지원 사업이 「사회보장기본법」 제26조<sup>10)</sup>에 근거한 사회보장제도 신설제도 협의대상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.

문 의 처

도미화 입법조사관 (02-2180-8147)

8)의안번호 2111650, 김병주 의원 등 13인 발의(2021.7.22.). 현재 21대 국회 계류 중.

9) 서울시 보도자료 (2022.03.25.). “서울시, 지자체 최초 ‘부상입고 제대한 청년; 종합지원..전용공간 개소”. 서울시 보도자료 (2022.06.21.). “오세훈 시장, 부상 제대군인·가족과 간담회…’원스톱 상담센터’ 서울시청으로 확장이전”.

10) 「사회보장기본법」 제26조(협의 및 조정)  
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기존 제도와의 관계,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, 재원의 규모·조달방안을 포함한 재정에 미치는 영향 및 지역별 특성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상호협력하여 사회보장급여가 중복 또는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.  
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, 기존 제도와의 관계,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, 지역복지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.  
③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수집·조사 및 분석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  
1. 「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 
2. 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」 제29조에 따른 한국사회보장정보원  
3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  
④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, 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조정한다.  
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급여 관련 업무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.